

의안 번호	제3582호
----------	--------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2월 28일 오강현, 유매희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3월 11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3월 18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3월 18일

2. 제안이유

- 최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5의 신설(시행 2023.9.29.)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된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최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26조의5의 신설(시행 2023.9.29.)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된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생략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없음